

성년후견 종료시 관리계산기간 연장 허가 청구

청 구 인 000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후견인과의 관계:

사건 본인 〈〉〉〉

등록기준지: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청 구 취 지

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하는 기간은 2013. 00. 00.까지 연장함을 허가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. 00. 00. ○○법원 2013느단0000호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, 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.
- 2. 사건본인은 2013. 12. 31. 사망하여 성년후견이 종료되었습니다.
- 3. 청구인은 2014. 00. 00.까지 사건본인의 재산관리계산을 해야 하지만 사건본인의 재산이 다액이고, 부동산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법정기간 내에 이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.
- 4. 따라서 청구인은 민법 제957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

니다.



첨부서류

1.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(사건본인)각 1통1. 주민등록등본(사건본인)1통1.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(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)1통

2000. 0. 0.

위 청구인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제출법원 제출부수	※ 아래 참조 신청서 1부	관 련 법 규	민법 제957조 제1항 단/왕 가사소송법 제2조 2.가 , 송사건 가.라류
불복절차 및 기간	·즉시항고(가사소송법 제43조, 가사소송규칙 제27조) ·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의 불변기간 이내(가사소송법 제43조 제5항)		
비용	・인지액: 사건본인 수×5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・송달료: 청구인 수×3,700원(우편료)×10회분		
기 타			

※ 제출법원

- 사건본인(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)의 주소지 가정법원(지방법원, 지원)

가사소송법

제44조 (관할)

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. [개정 2013.4.5] [[시행일 2013.7.1]]

1의2. 미성년후견·성년후견·한정후견·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피후견인(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)의 주소지의 가정법원